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1997. 5. 2.

○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(97.5.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동언)

가. 제안이유

- 시·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. 12. 26일 도에 기구·정원을 승인 신청하여
- 경기도 자치 12200-1003(97.4.11.)호로 기구·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조정 : △1명(고용직 지도원)(안 제2조)
 - 본청 감사담당관실 인력보강→7명(6급 2, 7급 3, 8급 2)
 - 청소사업소 청소과 인력보강 : 2명(6급 1, 7급 1)
 - 3개구청 감사인력 등 감축 : △10명(6급 3, 7급 4, 8급 2, 고용직 1)
- ※ 고용직(지도원) 1명은 퇴직하였음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53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·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. 12. 26일 도에 기구·정원을 승인 신청하여
- 경기도 자치 12200-1003(97.4.11.)호로 기구·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 개정

2. 주요골자

- 정원조정 : △1명(고용직 지도원)(안 제2조)
 - 본청 감사담당관실 인력보강 : 7명(6급 2, 7급 3, 8급 2)
 - 청소사업소 청소과 인력보강 : 2명(6급 1, 7급 1)
 - 3개구청 감사인력 등 감축 : △10명(6급 3, 7급 4, 8급 2, 고용직 1)
- ※ 고용직(지도원) 1명은 퇴직하였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1호,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시본청 : 434명
- 4. 사업소 : 341명

5. 구 청 : 710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(현행과 같음)
1. <u>시분청 : 427명</u>	1. <u>시분청 : 434명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<u>사업소 : 339명</u>	4. <u>사업소 : 341명</u>
5. <u>구 청 : 720명</u>	5. <u>구 청 : 710명</u>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